

[별표 1의4] <개정 2016. 12. 30.>

산지일시사용기간의 결정기준 (제15조의4제1항 관련)

구분	산지일시사용면적	산지일시사용기간
1. 「광업법」에 따른 광물을 채굴하는 경우	산지일시사용면적과 관계 없음	10년 이내
2. 풍력발전시설(진입로를 포함한다)을 설치하는 경우	산지일시사용면적과 관계 없음	10년 이내
3. 제1호 및 제2호 외의 경우	10,000제곱미터 미만	3년 이내
	10,000제곱미터 이상 20,000제곱미터 미만	4년 이내
	20,000제곱미터 이상 30,000제곱미터 미만	5년 이내
	30,000제곱미터 이상	10년 이내

비고: 위 표에도 불구하고 다른 법령에서 목적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에는 그 기간을 산지일시사용기간으로 할 수 있다.